

국 토 교 통 부

훈계 요구·통보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밀양시, 창원시

관 련 자 ① 밀양시 ○○면사무소(전 ○○과) 지방○○주사 ○○○
② 밀양시 ○○면사무소(전 ○○과) 지방○○주사보 ○○○
③ 밀양시 ○○과 지방○○주사보 ○○○
④ 창원시 ○○구 ○○과(전 ○○○○과) 지방○○주사보 ○○○
⑤ 창원시 ○○동주민센터(전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3. 7. 26.부터 2014. 7. 17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4. 4. 2.부터 2014. 12. 31까지, 지방○○주사보 ○○○는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4. 7. 2.부터 2015. 7. 12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5. 7. 13.부터 2016. 7. 12까지 국토교통부 등¹²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아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기술능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12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는 국토교통부, 타 지방자치단체,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에서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시·도지사¹²⁹⁾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건설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¹³⁰⁾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¹³¹⁾는 건설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¹³²⁾를 부과¹³³⁾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

1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130)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1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지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132) 과태료는 횡수별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이며, 다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도록 규정

1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밀양시(○○과)에서는 2014. 3. 26. 국토교통부로부터 (주)○○○○(대표자 ○○○, 토공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혐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2016. 11. 30.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밀양시와 창원시에서는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받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38개 업체(64건)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통보받은 45개 업체(총 7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 창원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 통보한 38개 업체, 등록기준 미달 혐의로 통보된 5개 업체 및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혐의로 통보된 2개 업체 등 총 45개 업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위한 절차를 각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